

대약진 운동기 중국의 토지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이종수¹ · 김재홍*

A Study on the Land Operating System in the Great Leap Periods in China

Lee, Jong-Soo · Kim, Jai-Hong

ABSTRACTS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China's land operating system in the great leap period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or one thing, though the landownership in China was basically performed in public, a portion of private management was allowed. The more this kind of private management allowed, the more the life standard of farmers enhanced. For another thing, the conversion from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people's commune happened swiftly, and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conversion arose instantly, which made the operation system changed partially. The last, but not the least, even in the point of the rapid communistic movement, private management was locally accepted in the name of three self and one private management. Besides, as we can recognize from the case study of Daichai village, the operation of a large working group and a small working group was done in political context.

Keywords : land operating system, the great leap periods, landownership, people's commune, private management

¹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 Jeonju 561-756, Korea)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 Daejeon 305-764, Korea)

*교신저자 : 김재홍(E-mail : jaihong@cnu.ac.kr, Tel : 042-821-6747)

I. 서론

1958년을 전후하여 전개된 대약진운동은 그 전 1차 5개년 계획기(1953-1958)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약진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알력과 대립이 문화대혁명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농촌 특히 토지 운영체계의 연구는 주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성립 후 중국의 토지소유체도가 3차례의 중대한 변혁을 겪었다고 보고 있다. 제1차는 1949년-1952년의 토지혁명에서 封建的인 토지제도를 소멸하였고, 제2차는 1953년-1979년의 農業合作化와 인민공사화운동, 제3차는 1979년 이후의 家庭承包制의 개혁이다.

본 연구는 제2차의 중기에 해당하는 인민공사의 토지운영체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토지운영체계란 토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으로 사회주의의 집단소유체제내에서 토지의 운용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특히 농촌지역에서 기본적 생산수단인 농지의 운영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농민의 생활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토지소유는 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통과, 1988년 12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와 노동대중집단소유제를 실행한다.”로 되어 있다. 이 수정은 가정승포제로 개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체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동조

의 뒷부분에서 “국유토지와 집단체소유의 토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따로 정한다.”고 하여 가정승포제를 가능하도록 사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체계만으로는 농민의 생활상을 알 수 없고, 운영체계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인민공사의 경우 노동대중집단소유제로 소유제는 단순하나 운영에 있어 삼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었고, 삼급 중 어느 조직이 운영의 지배권을 가지는가는 당시의 정치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사회체제에서 집권당의 정치노선, 지도사상, 그리고 고층간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사회와 경제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요소이다. 근대의 중국의 농촌사회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면 중국공산당의 정책 및 그 변화를 읽지 않으면 안된다. 토지운영체계 또한 중국공산당의 정책 특히 지배집단의 노선이나 사상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므로 토지운영체계의 변화를 통해 지배집단의 사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약진운동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운동이었으므로 이 시기의 토지운영체도는 당시 중국의 통치계급이 생각하고 있던 사회주의의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던 사회체계를 인민공사 토지운영체계의 구체적 모습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대약진 운동기 이전 중국의 토지운영체계

2.1 중국공산당정권 성립후의 토지제도와 운영방안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1950년 6월 중국 중앙 인민정부위원회 전체회

1 가정승포제란 등소평의 개혁정책이후 농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개인이 경영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을 통과하고 6월 30일자로 발표하고 실시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부농의 자경 경지와 고용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 및 일체의 재산은 보호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지주의 토지, 역축, 농기구, 잉여식량, 그리고 농촌에 있는 잉여의 주택만 몰수한다. 지주의 기타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
- ②이전과는 달리 “平分土地”라는 구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지주의 토지를 무조건 몰수하지 않고, 일부 토지를 계획적으로 국유를 한다.
- ③선진적인 농기구 사용과 기술적 경영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몰수하지 않고, 분산되지 않도록 토지정책을 실시한다.
- ④농민회만 조직하고, 貧農團, 雇工工會(농사에 고용되는 농민조직)를 조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지개혁법은 해방당시 무상몰수 습관을 방지하고, 중국혁명과 생산발전, 경제발전, 과학기술발전을 동시에 연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공포한 후 중앙 인민정부는 또 다른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들은 토지개혁법의 보충으로 볼 수 있다. 1950년 7월 14일 중앙인민정부 정부위원회의 제四十一차정무회의에서 통과한 《농민협회조직통칙》, 《人民法庭組織通則》이다. 이와 함께 1950년 8월 4일 중앙인민정부 정부위원회 제四十四차 정무회의에서 통과한 《유관 농촌의 계급 성분을 분류하는 결정》을 공포했다. 이 법령들은 토지개혁이 법률과 정책규정에 따라 실시되도록 보장한 것이다.

(2) 당시의 상황

1952년, 중국의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국민당의 세력을 내륙에서 기본적으로 소멸하였고 토지개혁도 사실상 완성했다. 중국사회 안전질서를 되찾고 경제도 점차 정상화 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새롭게 나오고 있었다. 특히 농촌에서 토지개혁 직후 농촌에서 토지의 매매가 늘어났으며 그 결과 “兩極分化” 현상이 발생하였다. 중국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되었다.

토지개혁후의 중국농촌 사회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소량토지의 개인소유제도 즉 일가일호의 소농경제형태가 점차적으로 당시 중국농촌사회경제의 주도적 지위로 자리를 잡았다. 당시의 농촌의 자작농수는 전체농가의 85%-90%를 점하였다. 둘째, 사회의 안전과 인구의 증가로 농업생산이 신속한 발전하여 전쟁 이전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생산수준의 저하와 현대적 생산수단의 부족으로 전통적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많은 농가의 생활은 상당한 빈곤에 처해 있었다. 셋째, 토지혁명 후 중국농촌 사회구조와 정치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사회의 지주와 부농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위치가 약화되고 빈농과 중농의 사회정치적 위치가 상승했다. 사회구조도 180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당시의 중국농촌사회에서 토지매매와 貧富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농촌의 “兩極分化”는 1953년 중국 농촌합작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표 1. 토지개혁 전, 후 중국농촌의 계급 구성변화

	빈, 고농	중농	부농	지주
개혁 전	70%	20%	6%	4%
개혁 후	30%	60%	6%	4%

자료: 陳吉元등, p88.

(3) 합작사운동의 전개

1951년 9월 20일, 제1기 전국호조합작회의에서 《중공중앙 농업생산호조합작에 관한 결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당시의 전국의 농생산호조합작에 대하여 총결짓고 금후 중공중앙의 농업합작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초안에서는 당시 각 지역의 농업생산 합작형식에 대해 3가지로 총결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간단한 노동합작형식, 이 형식은 최초의 농업합작형식으로서 임시적 계절성의 성질을 띤다. 둘째, 常年적인 호조조² 형식, 셋째, 토지를 가입조건으로 하는 농업생산 합작사형식이다. 이 형식은 “토지합작사”라고도 하며 당시의 최고형 농업합작조직이다. 이 결의안의 발표로 1952년 전국적으로 농촌합작사운동이 전개되었다.

1951년 말에 농가의 호조조, 합작사에 가입한 수는 19.2%에서 1952년 말에는 40%에 달하였으며, 1954년에 58%에 달했다. 1953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호조합작운동이 가속화되어 운동의 중점은 호조조에서 초급사로 進入시키는 것이었다.

1953년 신중국의 제1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으며, 1954년 2월, 제7차 4중회의 중국공산당 과도시기의 총로선을 제출했다. 이 총로선을 “一化三改”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공업의 현대화 실현(一化)과 농업, 수공업과 자본주의 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三改)이다.

호조합작운동이 농업생산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면

- ① 농업생산에서 역축과 농기계 부족상태를 극복하고 농업생산의 정상적 진행을 保障했다.
- ② 경작수준을 제고하고 생산기술, 생산조건을 개

조하여 농업생산의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연재해의 극복에서도 성과를 올렸다.

- ③ 농업생산의 선진기술, 선진경험의 보급이 가속화되었고 농민의 집체정신이 강화되고 생산의 적극성이 제고되었다.

호조합작운동의 발전 중에 일부 지역에서 급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리하여 중공중앙에서는 1954년 4월 《농업생산을 유도하는 관건》이라는 中央文件을 발표하여 극진적 상황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① 계획지표의 조정: 5개년 계획에서 규정한 계획 목표 중에 5년 내 생산증가율, 농업기계화 등 비현실적인 발전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농업수리시설개조, 일부의 신식농업도구를 농업생산에 이용, 초보적인 농업기술의 개량, 그리고 농가의 생산적극성 발휘 등을 이용하여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으로 정한다. 1952년 생산량을 基數로 증산율을 30%로 정하고 1953년에만 증산율을 7%로 정했다. 호조합작사의 발전계획 중 5년 내 조직된 농가수는 과거의 해방구는 농가수의 80%, 신해방구는 농가수의 70%로 정했다. 농업생산합작사는 과거 해방구는 45%, 신해방구는 12%로, 상년조의 신구는 30%로 공제하도록 했다.

- ② 春耕생산을 일체 사업의 중심으로 함: 일체 공산당의 정부행정, 법률보급 등 봄철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은 改變 혹은 축소하도록 하여 일체 농촌사업을 봄철 농업생산위주로 실시한다.

- ③ 소농경제의 특성을 중시함 : 소농경제의 사유

² 호조조란 협업에 의한 공동경작조직을 말하며, 합작사는 공동생산조직을 말한다. 초급합작사가 합병하여 고급합작사가 되는데 하남성 信陽지구의 경우 27개의 초급합작사가 1개의 大社가 되었으며, 요령성의 경우 9,600개의 초급합작사가 1,461개의 고급합작사로 합병하였다(신승하, p.152)

성과 분산성 특징을 중시하고 합작운동이 발달한 지역이라도 소농의 생산적극성을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농경제를 보호하고 극진적인 사고로 소농을 강제적으로 합작 조직에 포함하게 해서는 안되며, 농가의 사유자산을 보호한다.

2.2 합작사 운동의 변화

(1) 농업합작사 운동 중심의 변화

1953년 가을을 시작으로 농업합작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즉 “호조조”의 발전단계에서 “초급사”의 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 농업발전이 공업화 발전 속도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의 전반적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어 공산당의 전국 경제발전 정책에 지장을 주었다. 중앙정부의 식량의 통일구입, 통일배급 계획실시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농업생산의 미진, 공산당의 새단계 총노선 제정에 대한 당시 농업발전형태가 이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었다.

1953년 10월, 제3차 전국호조합작회의 개최되고 1953년 12월 《농업생산합작발전에 관한 결의》에서 중공공산당 과도기의 “총로선”의 요구에 따라 공업경제의 고조와 발맞추는 농업경제의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고립, 분산, 보수, 낙후한 개체경제가 농업생산성 발전에 제한을 주어 공업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작은 규모의 소농경제는 인민생활수준의 개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개조해야 한다. 이리하여 중앙정부가 농촌의 합작화를 촉진하였다.

1953년 겨울을 시작으로 농업초급사가 신속하게 발전되었다. 1954년 여름 22만개의 농업생산 합작사를 성립하고, 1954년 12월까지 48만개사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농촌의 위기와 함께 “停, 縮, 發”

”(정지, 축소, 개방)이 제기되었다. 합작사의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일부만 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제시되었다. 당시 농업합작화의 과속발전은 농민의 불안감을 유도하였다. 또 1954년 11, 12월에 국가는 100억 톤의 식량(그중에 농민의 구량(口糧)도 일부 포함됨)을 수구하여 농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농업합작화 발전속도의 가속화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심해지고 농가들이 역축을 팔고 도살하는 현상도 발생하여 농업생산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농촌사회의 각종 관계가 긴장상태로 변했다. 그 원인은 일부 농촌간부들의 극진적인 사고, 업적내기로 농가를 합작화 조직에로의 강제적인 가입,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으로 식량수구의 확대 등에서 발생한 일이다.

(2) “停, 縮, 發”

1955년 중국공산당은 당시 농촌의 긴장상태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4개의 중앙문건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농업생산합작사의 정돈과 공고에 관한 통지》, 《역축보호에 관한 긴급 지시》, 《소수민족지역에서 농촌사회주의 개조를 진행하는 문제에 관한 지시》, 《식량수구사업의 신속한 안배와 농민의 생산정서안정에 관한 긴급 지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작사발전

첫째, 합작사운동은 공고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방침을 달리한다. 즉 발전을 정지시키고 전력으로 공고를 강화한다. 적당히 축소하며, 공고의 기초위에서 발전하도록 한다.

둘째, 합작사발전을 공고하는 사업에 자원을 집중화한다.

셋째, 소수민족지역에서의 농업합작화 운동은

민족적 특성과 지역의 정치문화 등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많은 시간과 온전한 방침으로 사회주의 개조를 실시하여 농촌합작사를 순리롭게 진행한다.

② 統購統銷(계획구매와 계획판매-배급)

첫째, 국가식량의 통구(統購) 수량과 통소(統銷)의 수량은 반드시 실제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수요와 농가의 농산물 판매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③ 역축보호

첫째, 합작사운동 중에 역축이 소유농가에 대한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역축사료와 월동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1956년 6월말까지 전국의 2만개의 불합격합작사를 폐지하여 합작사운동의 가속화를 억제했다.

(3) 당시의 상황

① 식량수급 문제와 식량의 “統購統銷”

문제발생의 원인을 보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공급측면에서는 식량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수요측면에서는 농가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농가 자체의 식량소비가 증가하였고,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의 식량소비의 증가하여 식량수요가 급증하였다.

식량수구와 공급이 통일화되기 전에 중국의 식량시장은 자유회시장이었다. 농가는 농업세(공량)를 납부한 후 잉여농산물을 시장에서 자율판매할 수 있었다. 당시의 식량 경영자로는 국영상업회사, 공소합작사외에도 私營糧商이 있었다. 1953

년 7월 1일-1954년 6월 30일까지 전국의 348억근의 식량 중에 국영상업회사가 69.9%를 수구했고 私商이 30.1%를 수구했다. 이 수치로 볼 때 私商이 당시의 식량시장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私商이 일정한 정도에서 식량시장을 조절하였다.

② 식량의 “統購統銷”정책

중앙정부는 엄중한 식량 수구 문제를 인식하여 전국적으로 “통구통소” 실시를 준비했다.

1953년 11월 19일 중공중앙정무원 194차 정부회의에서 《식량의 계획수구와 식량의 계획공급 실시에 관한 명령》을 통과하여 12월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식량의 통구통소의 실시가 시작되었다. 이 명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잉여식량의 농가에 대하여 식량 계획수구를 실시한다. 통구대상의 농가는 농가용 식량, 종자, 사료, 농업세(실물세)이외에 잉여식량을 정부의 식량종류, 국가가격, 정부의 수구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구한다. 당시에는 잉여식량중의 80%-90%를 정부에서 계획수구를 하였다.

둘째, 도시주민과 농촌의 식량부족 농가에 대하여 식량계획 공급을 실시한다. 정부행정기관, 교육기관, 단체, 기업인원은 조직을 통해 공급하고, 일반시민은 “通帳”(“購糧證”혹은 “戶口簿”)제를 실시하고, 향진의 주민, 경제작물생산지역, 재해지역, 일반농촌은 정부계획과 자체평가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나아가 음식점, 식당, 교통업 및 숙박업 그리고 공업용식량은 일정한 기간의 평균수용에 따라 정액 공급한다 (자체수구를 금지).

셋째, 정부의 식량시장 통제제도를 실시하고 私商의 식량경영을 금지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統一管理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분담의 식량관리체제를 실시한다.

1985년 1월 1일, 중공중앙 국무원 《농촌경제의 진일보 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 10지 정책》이 통과실시로 “통구통소”정책이 폐지되었다.

(4) 농업합작화운동의 가속화

1955년 10월 중공중앙 제7屆 6차 중앙회의에서 《농업 합작화에 관한 결의》가 통과되었다.

- ① 농업합작화운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1955년 봄까지 30%-40%의 합작화 정도를 실현하고, 합작화운동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1957년 봄까지 70%-80% 정도로 촉진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 ② 전국의 합작화정도가 10%-20%인 지역에서는 1958년 봄까지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 ③ 합작화운동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토지개혁도 완성하지 못하여 특히 邊疆지역들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합작화운동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전국적으로 농업합작사운동이 고조되고 전국적으로 농촌합작화운동이 가속화 되었다.

이와 같이 몇 년간, 중앙지도층이 합작화 발전에 관하여 논쟁을 거친 후 중국농업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줄 금후의 중국농업합작사운동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1955년-1958년까지 중국농업은 비현실적발전 즉 자영법칙을 위반하는 인위적인 발전계획으로 중국농업을 위기로 몰아갔다³.

표 2. 농업집단화의 상황

〈단위: %〉

년도	호조·합작 /총농가	합작사·호조조			계
		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1950	10.7	10.7	-	-	10.7
1951	19.2	19.2	-	-	19.2
1952	40.0	39.9	0.1	-	40.0
1953	39.5	39.3	0.2	-	39.5
1954	60.3	58.3	2.0	-	60.3
1955	64.9	50.7	14.2	-	64.9
1956	96.3	-	8.5	87.8	96.3

자료: 蘇星, 위대한 10년, 姬田光義, 阿部治平, p.446.에서 전재.

III. 중국농촌의 사회주의 운동: 대약진 운동

3.1 대약진 운동의 전개

인민공사제도는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산물이 다. 대약진운동의 원인과 대약진운동기 농촌의 상황을 살펴보고 인민공사의 성립과 운영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950년 6월 제7기 3중전회(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차 회의나 2차 회의에서 모택동은 빠른 시일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과도기를 거친 후인 3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1967년 정도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天兒慧, pp.45-6). 그러나 1956년 2월 후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비판과 같은 시기의 百花齊放, 百家爭鳴은 좌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이에 반우파 투쟁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최대생산을 가정한 통제경제에서 과도한 식량수구, 집단을 강조하여 개별적 부업의 억제- 특히 역축의 감소는 이 시기 농업생산력을 감소시켰다.

한편 농촌에서는 1955년의 중국농업의 합작사 운동의 가속화됨에 따라 1956년을 시작으로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 운동이 고조를 이루었다. 농촌의 합작화의 가속화의 표면적인 성과로 인하여 중공의 지도층은 농업합작화운동에 대하여 새로운 발전요구를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본주의의 완전한 소멸이다. 1956년 1월 중공 최고국무회의에서 《十二年農業發展綱要》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3차의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중국농촌이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12년 후 중국의 농촌은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한다. 綱要의 내용은 농업의 전면을 다루고 있다. 농업합작화, 농촌의 문화, 의료, 교육, 농민의 복지 등 그 중 농업생산에 대한 내용은 전체내용중의 중심이다. 그러나 1956년 말부터 1957년에 걸친 합작사로부터의 퇴사와 해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농촌에서 자본주의를 소멸하고 사회주의를 완성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뜻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1956년 일부 농촌정책을 연구하는 중앙간부들이 1956년 봄의 합작사 과속 발전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包產到組, 到戶⁴”를 제출하였다.

1958년 5월, 중국공산당 8차대회 2차회의에서 《목전의 형세, 당의 사회주의건설 총 노선과 금후의 임무》, “鼓足干劲(힘을 내자)” 총노선을 제출하여 중국의 “대약진” 운동의 이론기초를 형성시켰다.

모택동 등 중앙지도자들의 급진사상에서 5년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에 미국을 초월한다는 구호를 내놓았다. 농업부는 제2차 5개년계획의 농업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식량생산과 면화생산은 5년 내 2배의 증가목표를 내놓았다.

3.2 인민공사의 성립

1953년 10월, 중공중앙의 제3차 농업호조합작회의에서 호조합작사를 대규모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大社를 조직하면 농가의 토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55년 7월, 《농업합작사에 관한 문제》에서 제3단계는 중간 정도의 사회주의적 소형합작사의 기초 위에서 自願, 互利的 원칙으로 농민을 호조하고 진일보 연합하여 완전한 사회주의 성격이 있는 대형농업생산합작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58년 3월, 성도에서 개최된 중공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 관점이 다시 제출되었다. 즉 소형생산합작사를 계획적으로 적당히 합병하여 대 농업합작사를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57년 겨울부터 1958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농업수리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형 수리건설 사업은 각 향, 각 현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밖에 없었고, 소형합작사의 지역적 한계가 대형 수리건설에 문제되었다. 지역간의 합작이 이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합작사들이 합병하여 대합작사를 만드는 현상도 발생했다.

1958년 3월, 중공중앙은 《소형농업합작사를 적당히 합병하여 大社로 만드는데 관한 의견》을 통과했다. 현, 시의 수리화와 금후의 기계화에 대비하여 조건이 구비되는 지역에서는 소형생산합작사를 계획적, 적당히 합병하여 대형합작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포산도조는 組, 포산도호는 戶가 일정 공출량을 제외하고 이익의 일부를 가지는 제도로 이후 가정승포제로의 변환에 기초가 되었다.

1958년 4월, 중국의 제일 처음으로 되는 인민공사인 하남성에서 衛星인민공사가 성립했다. 1958년 8월 농촌을 시찰하면서 毛澤東은 “人民公社로 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는 칭찬을 했다. 1958년 8월, 중공중앙의 확대회의에서 《농촌에서의 인민공사 성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를 통과하였다. 이 결의에서 인민공사의 성질은 “농, 임, 축, 어, 부업이 전면 발전하는 공, 농, 상, 학, 병과 상호 결합하는 인민공사”라고 정했다. 이 결의는 중국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켜 중국은 2개월 내 사회주의적 집체소유제도로 전이했다.

3.3 인민공사의 특징

(1) “一大, 二公(첫째는 크게, 둘째는 집체공용)”과 “政社合一”

① “一大, 二公” : 인민공사의 규모가 크고 생산수단의 공유화정도가 높다.

원래 고급합작사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더 큰 공사소유로 하고, 일부 농가가 사유로 하고 있었던 생산자재, 역축과 토지를 공사소유로 하였다. 재산관계는 “一平, 二調(첫째는 평등하게, 둘째는 조정하여 분배)” 방법으로 일체 주요 생산수단은 전인민소유제로 하고 생산품은 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사하여 사용한다. 이윤, 농가소비, 생산지출 등 일체행위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확정한다.

표 3. 1958년 인민공사화의 과정

	8월 말	9월 상순	9월 중순	9월 하순	12월 말
인민공사수	8,730	12,824	18,985	26,425	26,578
공사가입농가(만호)	3,778	5,979	8,122	12,194	12,325
공사가입농가비율(%)	30.4	48.1	65.3	98.0	99.1
공사평균농가수(호)	4,328	4,662	4,781	4,614	4,367

자료: 조훈, p.199.

표 4. 7589개의 인민공사의 상황 (전국 11개성, 시, 지치구의 인민공사에 대한 조사)

농가수	공사수	총공사수에서 점유율(%)
5000미만	5287	69.7
5000-10000	1718	22.6
10000-20000	533	7
20000이상	51	0.7

② “政社合一”: 인민공사는 사회주의사회 농촌에서의 기초단위이고 경제조직, 정권조직이기도 하다. 인민공사는 생산건설 관리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식량, 무역, 민정, 문화위생, 치안, 민병, 민사소송 및 기층행정업무 등의 업무도 한다. 그리하여 인민공사는 공, 농, 병, 상과의 결합을 실행하고 경제, 문화, 정치, 군사 등의 통일체가 된다. 생산과 경영, 금융과 법정, 민병(예비군)이 인민공사내에 있을 정도로 인민공사는 政社가合一되어 있었다.

정부는 인민공사를 실질적으로는 국가기층의 부속으로 하고 집체경제로 하여금 완전히 자주권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했다. 농촌간부의 임명제, 즉 비선거제로 정부가 완전히 인민공사의 일체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단체노동, 통일분배, 군사화관리 등 일체를 국가소유제를 실시하였다.

(2) 인민공사의 운영체제의 확립: “三級所有, 對爲基礎”

초기 인민공사는 공사관리위원회 한 곳에서 전체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1958년 12월 제8계6차 회의 《인민공사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공사관리위원회, 생산대대(관리구), 생산대(생산소조)의 3단계 관리기구가 설치되고 생산대대가 경제계획의 단위로 되었다.

나아가 1959년 4월, 중공중앙 상해에서 8계7차 회의 《인민공사의 18문제에 관하여》에서 인민공사의 三級所有 중에서 생산대대의 소유를 기본이라고 규정하여 기본핵산 단위는 생산대대로 하였지만, 생산소대도 상당부분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고, 동시에 생산소대도 토지, 역축, 농기구 및 노동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권을 승인하였다. 1961년 3월, 《농촌인민공사공작조례》 “인민공사가 경제상에서는 각 생산대의 연합조직이고 생산대대가 기본핵산단위이다. 생산대(구 생산소대)는 직접생산과 복지사업을 조직하는 단위이다.” 라고 인민공사의 운영체도를 확정하였다.

(3) 인민공사의 생산과 노동방식

인민공사는 경제조직으로서 단일적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 임, 축, 부업, 어업 등 다중경영을 하고 있었다.

1958년 12월, 중공중앙 《인민공사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인민공사 생산발전의 방침은 정부의 통일한 계획과 적지적성의 원칙으로 공업과 농업, 자금과 상품생산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상품생산은 잠시적, 한정적이다. 즉 인민공사의 상품생산은 본 공사의 생산과 본 공사의 인민생활을 위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리하여 인민공사는 최대한 밀봉된 자금자족의 자영경제 실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민공사의 생산활동 중에 생산활동의 주체인 농민은 자주권이 剝奪당한 단순한 노동력일 뿐이다. 농민은 명분상의 집체의 주인이고 현실상에서는 집체의 생산과 경영에서 참여할 수 없어 농민들의 생산과 경영의 적극성과 주동성이 상실하였다.

인민공사의 노동은 集團同伴式 노동을 실시하였다. 십여명, 몇십명이 統一指揮하에 동일 시간, 동일 장소,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이다.

(4) 인민공사의 분배제도

1958년 12월, 중공중앙 《인민공사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사원의 개인소비부분의 분배는 工資(본금; 인금)제와 供給제를 결합하는 분배제도를 실시한다.” 는 것이었다. 즉 인구수에 따라 식비와 복장비,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공자부분은 노동태도, 기술능력, 체력상황, 연령 등을 구분하여 등급(10개 등급)으로 발급한다. 이러한 생활소비와 노동관계를 분리하고 개인소비품의 분배와 인간의 수요를 直接連結하는 분배제도는 빈부평등, 평균주의에 입각하여 多勞多得을 실현할 수 없고 농민의 생산적극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3.4 인민공사내의 운영체제 변화

(1) 인민공사의 위기

급진적으로 건립된 인민공사는 반년 후인 1959년 봄에 위기를 맞았다. 그 이유는 첫째, 관리의 混亂, 둘째, 사원들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이 보편적으로 저하된 것이며, 셋째, 그 결과 심각한 식량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959년 2월-3월 중공중앙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인민공사의 정돈에 대하여 방침을 정하였다. “統一領導, 隊爲基礎; 分級管理, 權利下方; 三級核算, 各計損益; 分配計劃, 由社決定; 適當累積, 合

理調劑；物資勞動，等價交換；按勞分配，承認差別”로 방침을 정하고 당시의 각 지역에 따른 생산량의 부과하는 등 사회의 “左”적 사상을 억제하고 초보적으로 “三級所有，對爲基礎”의 인민공사소유체제를 확립했다. 분배상에서는 인민공사는 안노분배, 다노다득의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확정하였다.

특히 권리의 하향이동(權利下方)은 노동 및 분배를 생산대대 중심에서 생산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농촌에서 승포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 농촌의 “生産承包制度” 유행과 폐지

1961년 일부지역에서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전국적인 농업생산발達の 점차적인 회복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包產到戶” 생산책임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劉少奇와 鄧小平 등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 三自一包(自留地, 자유시장, 자기경영, 승포제)를 허용하고, 농촌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등 문화대혁명 전까지 탈약진현상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962년 9월, 중국공산당 8계 중앙위원회의 10차 전체회의에서 《농촌인민공사 공작조례의 수정안》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인민공사의 “三級所有，對爲基礎”의 소유체도를 확립함으로써 1983년 인민공사 폐지까지 공식적으로 중국농촌에서는 이 소유체도를 실시하였다.

1963년의 “小四清(帳目(장부정리), 倉庫(생산원료와 생산품 정확하게 확인), 財務(거래관계), 工分(점수제 확인))” 운동으로 승포제도는 줄어들게 되고, 1965년의 “四清(정치, 경제, 조직, 사상)” 운동에 인하여 승포제도는 등소평의 개혁이 전까지는 물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3) 농업 “大寨정신”의 확산 : 대약진운동기 농촌사례분석

대체는 중국 山西省 昔陽縣의 東南쪽 5km에 있는 한 마을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성립 후 호조조를 조직하고, 1953년 초급사를 성립하고, 1955년에는 전촌이 통일된 한 개 공사로 집체화정도가 매우 높았다. 1955년 전국적인 농업합작사운동시기에 단기간에 고급사로 과속으로 완성했고, 1955년 12월에 토지 및 기타 생산자료 집체소유인 “新星농업생산고급합작사”를 성립했다. 1958년, 大寨도 전국적인 “대약진, 인민공사” 운동 중 준비가 미달한 상태에서 석양현에서 가장 먼저 인민공사를 세웠다.

당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浮誇하는 분위기 중에도, 大寨는 농토 기반정비, 과학적 재배방식, 과학기술의 보급, 토양개량, 경영관리의 개선, 집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등으로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소유제도체제상에서는

- ① 생산대대 소유체도를 확립한 상태지만 부분적 생산대의 소유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 ② 주요한 생산자료와 노동력에 대한 관리권은 생산대대가 아닌 생산대에 있다.
- ③ 생산대대는 생산에 대한 완전한 직접적 지휘권이 없고 생산 지표설정, 투자, 노동력 투입에 대한 공제권만 가지고 있으며, 생산임무완성에 대한 평가권, 최종생산물에 대한 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생산경영에서는 “三包, 一獎”, “四固定”를 실시하였다.
- ④ “三包, 一獎(세 가지 승포란 생산, 경영, 노동을 말하며, 일장이란 이를 잘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뜻이다.)”, “四固定(경영방식 중 소유관계를 고정하는 것으로, 대대에서 소유하였을 경우 대대소유, 생산대에서 소유하였을 경우

생산대 소유)”를 실시하여 농가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이 발휘되었다.

대체는 “三級所有(인민공사 - 생산대대 - 생산대)”를 실시하는 동시에 농가의 자류지보유와 부업을 허용하였다.

1963년도 대체는 큰 홍수피해를 맞았다. 그러나 대체 사람들은 일체동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홍수피해를 극복하여 당년도의 정부의 식량수구를 완성하였다.

당시에 생산성과 생산조건에 알맞는 경영방식으로 생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농촌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대체의 사례를 중국공산당은 당시 중국의 “대약진”, “인민공사”, “문화대혁명” 운동 중에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농업은 大寨를 따라 배우자”라는 전국적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64년 12월, 중국공산당 제3계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대체의 정신을 아래와 같이 총결지었다.

첫째, 인민공사의 집체적 역량으로, 자력경쟁으로 농업을 건설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킨 선진적인 대표이다.

둘째, 대체대대의 정치사상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를 사랑하고, 집체를 사랑하는 공산주의 풍격을 제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업은 대체를 따라 배우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5 대약진운동의 종언

대약진운동은 문화대혁명으로 종언을 고하게 된다. 문화대혁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여기서 길게 언급하지 않으나, 문화대혁

명 때 앞의 대체가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보고자 한다.

1966년의 “계급투쟁은 일체의 우선이고 정치는 일체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대체정신”도 “좌”적 사상으로 몰려 “극좌”의 모델로 정해졌다.

문화대혁명시기에는 대체도 예외없이 계급투쟁, 정치위주로 문화대혁명운동의 요구로 1970년 대체는 자류지의 완전 몰수, 생산대의 부분소유제도의 폐지, 부업의 억제 등으로 자본주의 성분을 철저히 소멸하여 또 다시 중국농촌의 선진성의 대표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농촌발전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대체현(전 대체대대가 석양현에 속했고 1970년에 석양현은 대체현으로 명칭을 바꾸었음)을 전국농촌의 새 모델로 선정했다. 중국공산당은 농촌의 계급투쟁: 계속혁명; 무산계급이 농촌에서의 완전통치의 대표로 1975년과 1976년 12월에 “농업은 대체를 따라 배우자”라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8년 중국공산당의 十一届三中全會 후 중공은 “계급투쟁을 강으로” 하는 노선을 폐지하고 전당과 전국인민의 사업중점을 현대화사회주의 노선, 방침을 정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새 역사적 변화의 길을 택하였다. 이리하여 중국문화대혁명의 파생적 운동이었던 “농업은 대체를 따라 배우자”와 대체현 보급 운동이 종료되었다.

IV. 결 론

1950년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약진

운동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길을 가게 된다. 따라서 중국사회주의의 구체적 모습은 대약진운동 시기의 모습을 통해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의 인민들은 “總路線”, “大躍進”, “人民公社”라는 것을 “三面紅旗”라고 부르며 20年 동안이나 고수하고 있었다. 모택동이 사망한 후 등소평에 의해 중국경제를 개방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1978年 中共 第12屆 3中全會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감히 이것을 포기하자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대약진운동 시기에 농업부문에서 이 운동과 연결되어 조장된 것으로 인민공사화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작은 인민공사를 큰 인민공사로 만드는 식으로 합작사의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재산의 공유화 정도를 점차 높여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중앙은 공산주의라는 이상사회로 나아가는 도중에는 과도기적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는 말로 이를 덮어버렸다. 그러나 인민공사의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운영체계의 변화를 통해 모색되고 있었고, 이런 시도들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때 빛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토지소유는 기본적으로 공유이나 일부 개별영농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런 개별영농이 보다 많이 허용되었을 경우 농민의 생활수준도 높았다.

둘째, 합작사에서 인민공사에로의 전환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곧바로 문제점이 나타나 부분적으로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셋째, 사회주의적 운동이 가장 고조된 시점에서 농촌사회에서는 삼자일포라고 하여 부분적

으로 승포제도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대체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산대대와 생산대가 번갈아가며 운영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董志凱, 1987, 《解放戰爭時期的土地改革》, 北京大學出版社.
2. 杜修昌, 1984, 《中國農業經濟發展史約》, 浙江人民出版社.
3. 席宣·金春明, 이정남·하도형·주장환 역, 2000, 문화대혁명사, 나무와 숲.
4. 小島晋治·丸山松幸, 박원호 역, 1988, 중국근현대사, 지식산업사.
5. 蘇星, 1980, 《我國農業的社會主義改造》, 人民出版社.
6. 신승하, 1993, 중국당대40년사, 고려원.
7. 岳琛, 1989, 《中國農業經濟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8. 奧村哲, 박선영 역, 2001,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소나무.
9. 이말남, 1998, 중국경제와 농업, 학우사.
10. 張永泉·趙泉均, 1985, 《中國土地改革史》, 武漢大學出版社.
11. 浙江社會科學院, 1990, 《浙江農業40年》,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2. 趙效民, 1990, 《中國土地改革史》, 人民出版社.
13. 조훈 편역, 1999, 강좌 중국근현대사, 역사교양사.
14. 中共中央黨校中國史研究所, 1989, 《中國新時期農村的變革》, 中共黨史出版社.
15. 中共中央黨校中國史研究所, 1981, 《農業集體化重要文件匯編》,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6.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허원역, 1990, 정통중국현대사, 사계절.
17.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現代經濟史小組, 1986, 《中國革命根據地的經濟大記史(1937年-1949

- 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8. 陳吉元, 1993, 《中國農村社會經濟變遷》, 山西經濟出版社.
19. 天兒慧, 임상범 역,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2003, 일조각.
20. 姬田光義, 阿部治平, 일월서각 편집부 역, 1984, 중국근현대사, 일월서각.